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16591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2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

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

주    심          대법관          천대엽          \_\_\_\_\_